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9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범위 정비 및 영업규제 신설)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8/13 개정 · 2024/8/14 시행)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정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제102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단방향 채널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이 해당
 -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
 - 위반 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 신설(제102조의2, 별표 20)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함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금지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금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등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

□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 정비(부칙 제2호)

-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 불수리 사유를 확대
-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
 -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
-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 마련(제102조 제2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의 신설 및 반영)
- 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 법제화 등)
- 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2024/8/22 개정 · 2024/10/22 시행)

1) 개정 이유

- 개인투자자의 국내 채권 투자 규모 급증에 따라 강화된 정보제공 보완 및 투자위험 설명의무 등 제도 정비 추진에 따라, 채권 투자권유 시 증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을 신설·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Ⅵ. 25. 1), 회사참고사항 25-1)
 - 일반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채권의 민평금리 및 민평가격 대비 거래비용 등 정보를 제공
 - 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 중인 전체 민평사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 평균 또는 해당 채권의 민평금리 사용 가능
 - ① 거래대상 채권의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을 거래금액 관련 참고지표로 제공
 - ② 매매단가와 민평가격의 차이 및 비율을 고객이 부담하는 거래비용(수수료) 관련 참고지표로 제시
-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중도매도시 유의사항 고지 등(Ⅵ. 25. 2))
 - 설명자료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안내
 -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
 - [예시자료] 만기 30년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안내(Ⅵ. 25. 3))
 - 증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거래가능 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채권의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
 - 만기도래 또는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된 채권 등 투자자 보호 사유가 없는 채권은 제외

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4/8/22 개정 · 2024/8/28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가 법제화(2024.8.28. 시행)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거래 목적 확인 대상 관련 법제화 내용 반영(제3-7조)
 - (기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등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
 - (개정) 계좌 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체 · 송금 · 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모든 고객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서식 수정(별표 7)
 - 모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서식 상 기존 확인 대상 문구 삭제

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4/8/22 개정 · 2024/8/23 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 · 합리성 제고를 위함
 - 금융위 ·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착육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024.5.13.)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

2) 주요 내용

-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 본PF로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객관화 · 구체화 (제9조)

-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브릿지론)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
 - (본PF)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

-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별첨 2)
 - 금융투자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평가기준에서 예외적인 평가 가능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